

23. 슬로베니아(Slovenia)

1.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22년
- 현행법 : 2010년(사회급여, 2012년 시행), 2012년(사회보험, 2013년 시행)

2. 제도형태

-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제도

3. 적용대상

- 사회보험
 - 당연적용 : 근로자, 자영자, 실업급여 수급자
 - 임의적용 : 15세 이상인 당연적용대상이 아닌 영구 거주자, 저임금 근로자, 시간제 근로자, 유족연금 수급자, 직업연금 수급자를 포함한 특정 부류 근로자와 해외에서 근로하는 슬로베니아인
- 사회부조 : 슬로베니아 거주자(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 포함)

4. 재원조달

- 가입자
 - 사회보험
 - 총소득의 15.5%(보험료율은 특정경우에 변동됨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저소득 : 전년도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의 54%*
 - * 2021년 60%에 달할 때까지 연 2%씩 점차 상향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고소득 상한은 없음
 - 임의가입자 : 평가소득의 24.35%
 - 임의가입자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저평가소득 : 전년도 가입자의 평균 월급여의 60%
 - 사회부조 : 없음
- 자영자
 - 사회보험
 - 평가소득의 24.35%. 농부는 평가소득의 15.5%
 - 평가소득 : 전년도 수익의 75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저평가소득 : 전년도 가입자의 평균 월급여의 60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고평가소득 : 전년도 가입자의 평균 월급여의 3.5배

- 사회부조 : 없음

○ 사용자

- 사회보험
 - 임금지급총액의 8.85%(보험료율은 특정경우에 변동됨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저소득 : 전년도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의 54%*
 - * 2021년 60%에 달할 때까지 연 2%씩 점차 상향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고소득 상한은 없음
- 사회부조 : 없음

○ 정 부

- 사회보험
 - 실업자, 육아급여수급자, 참전군인, 경찰, 전역군인을 포함 가입자의 특정 그룹을 위한 비용 및 예상치 못한 보험료 수입 감소로 인한 결손액 보전, 사회 부조급여의 재원, 강제 또는 임의 가입한 농부를 포함 사용자로서 보험료 납부
- 사회부조 : 총 비용

5.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연금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- 15년 이상 가입(인정)기간 및 65세 도달
 - 20년 이상 가입(인정)기간 및 64세 도달 여성(2019년에 64세6개월로 상향)
 - 조기연금 : 40년 이상 가입(인정)기간 및 60세 도달 남성, 59세8개월 도달 여성(여성의 경우, 2019년에 60세로 상향)
 - 고용은 중단되어야 함
 - 연기연금 : 60세 이상이고 40년 이상 가입(인정)기간이 있는 경우 가능(연령 제한 없음)
 - 부분(감액)연금 : 가입자가 시간제근로를 하는 경우 감액된 연금 지급
 - 연금은 상호협정에 따라 국외 지급 가능

○ 장애연금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
 - 근로능력 완전 상실(완전장애)로 판정되어야 함; 21세 미만의 경우 장애발생 시점에 3개월 이상의 가입기간 또는 가입 중이어야 하며, 21세에서 29세 사이의 경우 전체 가입가능연수(15년)의 25%이상 가입기간이 있어야 하고, 30세 이상인 경우 33.3% 이상 가입기간(총 20년)이 있어야 함
 - 장애가 산재 또는 직업병에 의해 발생한 경우 최소 가입요건 없음

- 가입자가 출산급여 또는 질병급여를 수급한 기간(각 주마다), 직업재활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
- 부분장애 : 보통 또는 유사한 업종에서 근로능력이 상당히 감소된 경우 지급하며 완전장애연금의 가입기간요건이 충족되어야 함
- 장애정도는 슬로베니아의 연금 장애보험국의 의료조사단에 의해 판단되고 재심사됨
- 상시간병수당 : 일상생활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상시 간병이 필요한 슬로베니아 영구거주자에게 지급
- 상호협정에 따라 국외 지급 가능

○ 유족연금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 - 사망자가 노령(조기)연금 및 장애연금을 받았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
 - 산재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인 경우 최소 가입요건 없음
 - 유족범위
 - 56세 이상 미망인(홀아비) 및 동거중인 배우자(매년 6개월씩 상향하여 2022년에 58세까지 상향예정)
 - 15세 미만 자녀(학생일 경우 26세)
 - 60세 이상의 피부양 부모
 - 피부양계자녀, 손자녀 및 고아
 - ※ 근로불능 시 연령제한 없음
 - 완전근로능력상실을 제외하고 60세(홀아비), 59세 8개월(미망인) 이전에 생존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연금은 중단됨, 60세까지 매년 4개월씩 상향됨 단,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는 제외
 - 상호협정에 따라 국외 지급 가능
- 사망급여(사회부조)
 - 가입자 사망 시 부양가족에게 지급
 - 소득조사 : 최대평가소득은 가족구성에 따라 다양함, 1인당 최대 €484.97,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부부에게는 최대 €1,077.06 지급 (2018.6.1.부터 각 €566.02, €1,282.21로 상향)
- 장례급여(사회부조)
 - 소득조사를 통해, 가족구성에 따라 1인당 최대 €617, 한 가족에게는 최대 €925를 가입자의 장례비용을 납부한 가족에게 지급

6. 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연금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
- 월 연금은 가입기간이 40년 중 최초 15년간 평균조정소득의 26%(남성) 또는 29%(여성)이며 가입기간 추가 1년당 평균조정소득의 1.25%(남성) 또는 1.38%(여성, 2020년에 1.3% 2023년에 1.25%로 하향) 가산
- 평균조정소득 : 1970년 1월 1일 이후 소득이 가장 높았던 연속된 24년 간의 가입자 월평균 소득
-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가입자의 소득은 평균임금 및 연금의 변동에 따라 조정됨
-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최저 평균조정소득 : 월 €797.16
-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최대 평균조정소득 : 월 €3,188.64
- 조기연금 : 65세 이전 수급 시 매월마다 0.3% 감액
- 연기연금 : 가입기간이 40년 이상이며 60세(남성) 또는 59세6개월(여성) 이후 최대 3년까지 매 가입기간의 3개월마다 1%씩 증액
- 근로자는 제한 없이 계속 근로가능
- 부분연금 : 조기 및 노령연금을 기초로 하고 근로시간감소에 비례하여 산정 연금은 65세에 5%까지 증액
- 연금액조정 : 국가 평균 월급여 및 소비자물가 변동에 따라 연 1회 조정

○ 장애연금

• 장애연금(사회보험)

- 월 연금은 가입기간 최초 15년간 평균조정소득의 26%(남성) 또는 29%(여성)이며 가입기간 추가 1년당 평균조정소득의 1.25%(남성) 또는 1.38%(여성, 2020년에 1.3% 2023년에 1.25%로 하향) 가산
- 평균조정소득 : 1970년 1월 1일 이후 소득이 가장 높았던 연속된 24년 간의 가입자 월평균 소득
-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가입자의 소득은 평균임금 및 연금의 변동에 따라 조정됨
- 장애가 60세 이전에 발생할 경우, 연금산정에 이용되는 가입기간은 장애 발생일과 60세 사이 기간의 66.7%와 60세와 65세 사이 기간의 50%를 포함함
- 장애가 60세 이후에 발생할 경우 가입기간은 장애발생일과 65세 사이 기간의 50%를 포함함
- 월 최저 장애연금액
 - 65세 이전 장애발생 : 가입자의 평균조정소득의 36%(남성) 또는 39%(여성)
 - 65세 이후 장애발생 : 가입자의 평균조정소득의 26%(남성) 또는 29%(여성)
- 월 최저평균조정소득 : €797.16, 월 최대평균조정소득 : €3,188.64
- 부분장애연금 : 하루 근무시간 수에 따라 완전장애연금의 12.5%~50%까지 지급. 특정한 경우에 부분연금은 40%까지 가산하며 최대 부분연금은 완전장애연금의 80%
- 상시간병수당 : 장애정도와 상시간병 필요정도에 따라 최저 평균조정소득의

76%,53%,26.5% 로 지급

- 급여조정 : 국가평균월급여 및 소비자물가 변동에 따라 연 1회 조정

○ 유족연금

• 유족연금(사회보험)

- 수급자가 1명일 경우 사망자가 받았던 또는 받을 자격이 있는 노령(조기), 장애연금의 70%, 2명인 경우 80%, 3명인 경우 90%, 4명 이상인 경우 100%지급

- 급여는 배우자 및 자녀에게 균등 지급

- 급여조정 : 국가평균월급여 및 소비자물가 변동에 따라 연 1회 조정

• 사망급여(사회부조) : 일시금으로 €297.53 지급

• 장제비(사회부조, 소득조사) : 일시금으로 €595.06 지급

7. 관리운영기관

○ 노동가족사회동등기회부(Ministry of Labor, Family, Social Affairs and Equal Opportunities)

• <http://www.mddsz.gov.si>

• 전반적 감독

○ 슬로베니아 연금장애보험청(Institute for Pension and Invalidation Insurance of Slovenia)

• <http://www.zpiz.si>

• 제도 관리(9개 지사 포함)

○ 재무부(Ministry of Finance)

• <http://www.fu.gov.si>

• 보험료 징수 및 재정관리

<2018 ISSA 자료>